

#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영구보존으로하고" 를 "30년으로하며 30년이후 연고자가 기간연장 신청을 요구 할때에는 1회에 30년 단위로 계속하여 연장해줄수있다.이경우 기간연장 신청에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는 다시 납부하여야한다"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유골매장),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후 유연고 유골이라도 1회에 한하여 연고자에게 서면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간연장 신청이 없을때에는 무연고로 간주하여 신문공고후 무연고 유골과 같이 공동묘지동에 집단 매장한다.

제9조 "법포에 의한" 을 "법포의 구분에 따라" 로 하고 "납부" 를 "선납" 으로 한다.  
"법포" 를 벌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사용료 및 관리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골당 사용을 신청한 자와 사용료를 징수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적용례)이조례 시행당시 봉안되어있는 유골에 대한 봉안기간과 봉안기간 연장에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는 개정조례를 적용한다.

“별표”

사용료 및 관리비

도 내 거주자				타 도 거주자			
구분	개	사용료	관리비	구분	개	사용료	관리비
1구당	62,000	32,000	30,000	1구당	93,000	48,000	45,000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행	정
안	안
<p>제5조(불안기간) 유골의 불안기간은 유연고 유골은 <u>영구보존으로 하고</u> 무연고 유골은 불안된 날로부터 10년으로 한다.</p>	<p>제5조 (불안기간).....            ....30년으로하며 30년이후 연고자가 기간연장 신청을 요구할 때에는 1회에 30년 단위로 계속하여 연장해줄수있다.이경우 기간 연장신청에 따른 사용료및관리비는 <u>다시 납부하여야한다.</u></p>
<p>제6조(무연고유골매장) 제5조 규정의 기간 이 경과한 무연고 유골은 <u>공동묘지에 합장한다.</u></p>	<p>제6조(유골매장)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 경과한후 유연고 유골이라도 1회에 한 하여 연고자에게 서면 통보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간연장 신청이 없을 때에는 무연고로 간주하여 신문 공고후 무연고 유골과 같이 공동묘지중에 집단매장한다.</p>
<p>제9조(사용료및관리비)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u>별표</u>"에 의한 납골당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허가 신청시 <u>납부하여야 한다.</u> 다만, 허가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도내 거주자의 유골 또는 분묘에서 발굴된 유골중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연고자가 납골당을 사용할시는 사용료 및 관리비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비부조금중 당시 사용료를 징수한다.</p>	<p>제9조(사용료및관리비).....            ..... "<u>별표</u>" 의 구분에 따라.....            ....<u>선납</u>.....</p>